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*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홍 길 동(계약자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000000-0000000
	주소(법인소재지) 등본상 거주지 기재(도로명 주소)	(휴대)전화번호 010-0000-0000
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명의로의 금융기관 예금액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본인명의로의 주식·채권 금액 원
	④ 증여·상속 가족 등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중 현금 또는 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금액 원
	[] 부부 [√] 직계존비속(관계: 부) [] 그 밖의 관계()	[] 보유 현금 비트코인, 연금, [√] 그 밖의 자산(종류: 퇴직금, 미래소득) 등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부동산 처분 및 전·월세보증금 회수,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등 자금 원	⑦ 소계 ②+③+④+⑤+⑥ 자기자금 합계 원
① 자금 조달계획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주택담보대출 작성금지 원
	우측 대출금액 합계 원	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신용대출 원
		그 밖의 대출 금회 당첨된 동호수 분양가 50% 기재 원 (대출 종류: 중도금 대출)
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
	⑨ 임대보증금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매수인 본인 소속 회사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금액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원
	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원	⑫ 소계 ⑧+⑨+⑩+⑪ 차입금 등 합계 원
[] 부부 [√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
⑬ 합계	⑦+⑫ 분양대금 + 발코니 확장금액 + 유상옵션 금액 원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원
	⑮ 계좌이체 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원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원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원
지급 사유 ()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2025년 06월)	[] 임대 (전·월세) 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 기재 금지(신고시점 기재 예정) ⇒ 년 월 일

제출인

홍 길 동(계약자명)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-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상기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-
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
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원		
		④ 증여·상속	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원		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:)		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원	⑦ 소계	원		
	① 자금 조달계획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원	주택담보대출	원	
					신용대출	원	
					그 밖의 대출	원	
				(대출 종류:)			
	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			
			⑨ 임대보증금	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	원	
	⑪ 그 밖의 차입금	원	⑫ 소계	원			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	원		
	⑬ 합계				원		
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원
	⑮ 계좌이체 금액	원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원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원
	지급 사유 ()	
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 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2.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